

축구부 운영 관리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관광대학에서 육성하는 축구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축구부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중 본 대학 축구부 관리 규정에 의하여 입학한 자로써 재학기간 중 선수생활을 계속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축구부장) ① 축구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② 부장은 축구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③ 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조 (특기활동심사) ① 축구부원은 최종학년도를 제외한 매 학기마다 특기활동 실적 심사를 받아야 하고 축구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심사자료를 작성한다.

1. 성적평가보고서 및 소견서(별첨1)

2. 대회출전 및 전적 확인서

② 특기활동 심사를 위한 평가는 매 학기별로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9월 1일부터 2월말 일까지로 한다.

③ 성적평가보고서의 평점 40점 이하인 자는 축구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별첨2)

④ 제반평가는 1차평가자는 감독이 하고 2차평가자는 축구부장이 하며 학과장이 최종 확인 후 학장에게 보고한다.

제 5 조 (출전 및 합숙훈련 계획제출) 축구부장은 시합출전 및 합숙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10일 전까지 학장에게 보고한다.

제 6 조 (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수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축구부장의 제청으로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질병휴학일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 조 (자격상실) 축구부가 아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축구부장이 학장에게 자격상실을 구할 수 있다.

1. 재학기간 중 군 입대, 임의휴학 및 품위손상 등의 고의로 선수활동을 포기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재학기간 중 선수활동이 곤란하다고 체육부장이 인정하는 자.

제 8 조 (출. 결석관리) 축구부원은 국가 및 학교 대표선수로 출전하거나 합숙훈련에 참가하는 기간은 축구부장의 확인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대회출전 : 소속팀이 실제경기에 임하는 기간 및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

2. 합숙 및 전지훈련 : 소속팀에서 실시하는 합숙 및 전지훈련기간과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

3. 출전 또는 합숙훈련 중 부상으로 인한 입원치료 기간.

4. 운동부 특성상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수업과 훈련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 (장학제도) 축구부원은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각종 대회의 입상성적에 따라 학장의 허가를 받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조 (축구부 자치 운영회) ① 축구부 운영에 따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축구부 자치 운영회를 둔다.

② 축구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축구부 자치 운영회에서 부담한다.

단, 감독의 보수는 제외한다.

③ 축구부 자치 운영회는 본교의 축구부원으로서 회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④ 축구부 자치 운영회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회계연도의 예산 및 집행내역을 전회원과 감독을 통해 축구부장에게 매월 별 보고한다.

제 11 조 (운영시행규칙) 축구부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축구부 운영관리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평가보고서 및 소견서

- 학 과 :
- 학 년 :
- 학 번 :
- 성 명 :

항 목	배 점	1차평가	2차평가	평 균
전 적	30			
참여도	25			
공헌도	25			
능 력	20			
합 계	100			

항 목	축구부장의 소견내용
선수의 성실성	
팀 성적	
참여도	
부모의 공헌도	
개인능력	

1차 평가자 : 감독 (인)
2차 평가자 : 축구부장 (인)
최종 확인자 : 학과장 (인)

<별첨2>

평 가 기 준 표

구 분	상	중	하
배점기준	20~30	14~19	0~13
전 적	중앙경기단체가 인정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연중 1회 이상 출전하여 준우승 이상의 성적을 올린 경우	중앙경기 단체가 인정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연중 1회 이상 출전하여 4강 이상의 성적을 올린 경우	중앙 경기 단체가 인정하는 전국규모 대회에서 연중 1회 이상 출전하여 5위 이하 성적을 올린 경우
참여도	연습시간의 90%이상 출석한 자	연습시간의80~90% 미만 출석한 자	연습시간의 80%미만 출석한 자
공헌도	축구부 자치 운영회 운영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자	축구부 자치 운영회 운영에 기여한 자	축구부 자치운영회에 별로 도움이 없는 자
능 력	입학 이후 개인 능력이 향상된 자	향상되지 않은 자	저하된 자